

# 야외공연장 관리규정 시행세칙

제 정 2008. 03. 25  
 개 정 2011. 11. 18  
 개 정 2016. 01. 07  
 개 정 2023. 02. 16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성남문화재단 야외공연장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신청 및 제출서류) ① 성남시 야외공연장(이하 “야외공연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재단법인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이하 “대표이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 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1. 행사계획서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등록증 사본
  3. 공연, 행사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팜플렛 등) 3부  
(다만,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사용 5일전까지 제출)
  4. 행사 후 복구계획서(객석 청소 동원 인원, 장비 등)
- ②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의 감면) ① 규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료감면 신청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8.>

다만, 국가 또는 성남시, 성남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주최·주관하는 행사는 예외로 한다.

② 삭제 <2011.11.18.>

제4조(사용허가)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문화예술의 교류와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 및 지방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2.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3. 문화예술 관련행사
  4.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개정 2011.11.18.>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 및 행사는 음악, 연극, 무용, 국악, 연예 등 순수문화예술 행사에 한한다.



③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을 통지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허가사항 관리)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서 교부 시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용허가대장에 허가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의 납부)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료 미납 시 사용허가는 자동 취소된다.

제7조(사용자의 권리)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별도의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하며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표이사는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철거를 위한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대표이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1.11.18.>

제8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야외공연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대표이사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전대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개정 2011.11.18.>

제9조(전기사용료 징수) 사용자가 별도의 전기기기를 반입하여 사용할 때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율에 의한 전기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홍보물의 부착) 사용자는 야외공연장 사용에 따른 공연 및 행사 등의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대표이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8.>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제정 2008.3.35.>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세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1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lt;개정 2016.1.7.&gt;

## 성남시 야외공연장 사용신청서

단체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 번호 (생년 월일)	
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				연락처	
공연행사 의정명					
공연행사 의용내					
사용기간 및 시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	출연 및 참석예정 인원수	출연인원 : 명 관계요원 : 명 예상인원 : 명		
사용시설 및 설비	기본설비				
	부속설비				
사용자동원장비 (설비)					
주요 경력 및 연혁 (지면부족시별지이용)					

재단법인성남문화재단야외공연장관리규정 제5조 및 시행세칙 제2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야외공연장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인)

- 첨부 1. 행사계획서 1부.  
 2. 행사 후 복구계획(객석청소계획, 사용자동원설비 철수계획 등) 1부.  
 3.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 등록증사본 제출  
 4. 공연행사 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팜플렛 등) 3부 제출  
 (단,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공연 5일전까지 제출)

**재단법인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6.1.7.>

# 성남시 야외공연장 사용료 감면신청서

단체명		대 표 자 성 명		사업자등록 번 호 (생년월일)		연 락 처	
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주소							
공연행사의 명칭							
공연행사의 내용							
사용기간 및 시간	년 년	월 월	일 일	시부터 시까지	출연 및 참석 예정 인원 수	출연인원 : 관계요원 : 예상관객 :	명 명 명
사용시설 및 설비	기본설비						
	부속설비						
감면 신청 사유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야외공연장 관리 규정 시행세칙 제3조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일월년

## 신청인 (서명, 날인)

## 재단법인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 성남시 야외공연장 사용변경 허가신청서

단체명			대표자 성명		연락처
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주소					
공연행사의 명칭					
공연행사의 내용					
변경내역	구분	변경전		변경후	
	사용일시				
	사용시설				
	부속시설				
	기타				
변경사유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야외공연장 관리 규정 시행세칙 제2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날인)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lt;개정 2023.2.16.&gt;

## 성남시 야외공연장 사용허가서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야외공연장관리규정 제5조 및 시행세칙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사용자	주 소					
	성 명					
사 용 목 적						
사 용 내 용						
사 용 시 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 용 료	계		기본시설		부속시설	
기 타 사 항						
년         월         일						
<b>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b>						



(별지 제5호 서식)

## 성남시 야외공연장 사용허가대장

일련 번호	사용허가 일자	사 용 기 간		사 용 목 적	사 용 자		사용료	비 고
		일 자	시 간		주 소	성 명		

